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 사항	결산	변동 성
1	미래에셋 3 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2	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 2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), 5)	○	○
3	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 AP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4), 5)	○	○
4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 3 호(주식)	4), 5)	○	○
5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 G1 호(주식)	4), 5)	○	○
6	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4)	○	○
7	미래에셋미국인덱스 EMP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1), 4)	-	-
8	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)	4), 5)	○	○
9	미래에셋연금 PanAsia 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10	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, 5)	○	○
11	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4), 5)	○	○
12	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 1 호(H)(채권)	4), 5)	○	○
13	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(주식)	4)	○	○
14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 3 호(주식)	4), 5)	○	○
15	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4)	○	○

2. 변경 사항:

- 1) 가입자격 변경
- 2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3월 18일(금)

4. 변경 내용:

1) 가입자격 변경

펀드명	변경 전	변경 후
종류 C-I	법인세법 시행령 17 조의 2 의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,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	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),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

포함한다)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,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
--	--

3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 3 억만들기술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2.63	22.94
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 2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5.48	5.18
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 AP 증권투자신탁(주식)	3	3	13.35	12.69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3 호(주식)	2	2	23.4	23.74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G1 호(주식)	2	2	20.1	19.73
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5	5	1.56	1.67
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	3	3	10.35	10.38
미래에셋연금 PanAsia 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16.39	16.67
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0.02	19.94
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13.31	12.71
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투자신탁 1 호(H)(채권)	4	4	5.41	5.37
미래에셋인텍스헤지증권투자회사(주식)	4	4	6.15	6.14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 3 호(주식)	2	2	22.41	22.53
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1	1	26.28	26.1

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

5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 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